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4
----------	------

2025년 4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문성호 의원 (찬성자 17명)
-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성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에 따라 국제경기 진행이 어렵고, 이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행사업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사장 관련(안 제8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대행사업으로 체육 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사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이사장)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8조(이사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서울시설공단 현황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¹⁾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83년 9월 1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감사와 6개 본부(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29개 처·실·원 및 1개 TF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규모는 정원 3,897명, 현원 3,725명으로, 이 중 약 94%는 장애인 콜택시 및 자전거(따릉이) 사업의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현장관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서울시설공단 조직 현황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²⁾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업’을 수행³⁾할 수 있음에 따라
- 현재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국·본부와 연계하여 ▲복지·경제 ▲문화·체육 ▲도로·교통 ▲시설안전 등에 대한 총 24개의 대행사업을 운영중에 있음([그림] 참조).

2)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사업별 서울시 주무부서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사 업】	【주 무 부 서】	【상 임 위 원 회】
지 하 도 상 가	재 난 안 전 실 (도로기획관 > 도로시설과)	도 시 안 전 건설위원회
자동차전용도로		
공 동 구		
도심지공사감독		
청 계 천 *문화디지털 포함	물 순 환 안 전 국 (치수안전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시 립 추 모 시 설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복 지 실 (돌봄고독정책관 > 어르신복지과)	
서 울 상 상 나 라	여 성 가 족 실 (아이돌봄담당관)	
월 드 컵 경 기 장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문 화 체 육 관광위원회
장 총 체 육 관		
고 척 스 카 이 돔		
어 린 이 대 공 원	정 원 도 시 국 (정원도시정책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상수도공사감독	서 울 아 리 수 본 부 (시설부 > 누수대응과)	
수도계량기검침·교체	서 울 아 리 수 본 부 (요금관리부 > 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서울글로벌센터	글 로 벌 도 시 정 책 관 (외국인이민담당관)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체 납 징 수 지 원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장 애 인 콜 택 시	교 통 통 실 (교통운영관 > 택시정책과)	교 통 위 원 회 *공단 상임위
공 공 자 전 거	교 통 통 실 (교통운영관 > 보행자전거과)	
공 영 주 차 장	교 통 통 실 (교통운영관 > 주차계획과)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		
공 영 차 고 지	교 통 통 실 (교통운영관 > 버스정책과)	
혼 잡 통 행 료	교 통 통 실 (교통기획관 > 교통정책과)	
교 통 정 보 제 공	교 통 통 실 (교통기획관 > 미래첨단교통과)	

[그림]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별 서울시 주무부서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 한편, 공단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K리그 개막 초기에 잔디 상태 불량으로 인해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장 관리에 대한 공단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⁴⁾됨에 따라
- 이에 서울시와 공단은 예정된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장의 잔디 교체 및 생육 개선을 위한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불량 잔디 교체를 위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잔디 생육에 필요한 선진장비도 추가 도입하여 잔디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⁵⁾한 바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안 제8조제3항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단 이사장은 현행 조례 제8조⁶⁾ 및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13조⁷⁾에 따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단의 대표로서, 공단이 대행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한 이사장의 실질적인 책임 범위라고 할

4) “논두렁 상암벌‘링가드 분노...서울시설공단엔 개선 민원 폭주’-뉴시스, 2025.3.4.

“잔디에 발목 걸려 넘어지는 K리그” 선수협도 해결 촉구’ 경향신문, 2025.3.4.

5)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긴급 복구 실사...29일 홈경기 전까지 정상화’ - 2025.3.7.

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7)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 있음.

-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악화와 관련하여 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이 보고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인 공단이 보다 책임있게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명문화된 책임 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장 책무의 연장선 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리 책임을 조례로 명확히 부여하는 것은 향후 공단의 시설물 관리 수준 향상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이성배,
이원형,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허 훈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에 따라 국제경기 진행이 어렵고, 이를 이용하는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행사업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사장 관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표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사장) ①・② (생 략)	제8조(이사장)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 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 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이사장)제3항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